

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공고 제2026-90호

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(등기)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(송달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6년 8월 7일

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

1. 공고사유 :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6. 8. 07. ~ 2026. 8. 21.(14일)
3. 공시송달 대상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체납자 주소
1	한현수	1980.00.09.	0145250277680002406	₩2,391,000	부산광역시 서구 천마로 225
2	한성구	1984.00.07.	0145250277680002223	₩6,340,000	충청남도 당진시 해명 1 로 199
3	권준일	1981.00.22.	0145250277680002405	₩12,141,360	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남로 13 번길 19
4	유한회사 지니 정연정	161414-0000570	0145250277680005300	₩14,175,000	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대곡 2 길
5	이종원	1976.00.06.	0145250277680002404	₩5,738,400	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백옥대로 2332 번길
6	김홍상	1973.00.11.	0145250277680002403	₩13,125,000	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소곡별리길 80
7	공정식	1971.00.07.	0145250277680001162	₩2,181,760	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85
8	이용관	1972.00.18.	0145250277680000910	₩7,101,000	대전광역시 서구 갈마중로 87 번길
9	이문수	1979.00.28.	0145250277680000052	₩4,087,500	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306
10	변종수	1971.00.06.	0145250277680000448	₩4,222,500	충청북도 괴산군 괴산로 대방래길 306
11	주식회사 리코	161511-0266308	0145250277680002285	₩5,527,500	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원두정 3 길
12	고성석	1961.00.15.	0145250277680004481	₩31,860,000	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334 번길
13	강은식	1967.00.28.	0145250277680000176	₩28,247,910	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256 번길
14	(유)민광고	151314-0000201	0145250277680005369	₩24,000,000	충북 영동군 양강면 묘동리 216

4. 문의: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(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, 6층 ☎ 042-347-2103, 2105)
5. 공고내용: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,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

주시기 바랍니다.

6. 납부방법: 인터넷지로(giro.or.kr) 또는 NTR POPCON(ntrpopcon.go.kr), 모바일앱(NTR POPCON)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(수납기관 :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)

7. 가산금 및 증가산금 등 안내

가.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%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,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.2% 증가산금(重加算金)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.

나. 증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, 가산금 3%와 증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%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.

다.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,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「국세징수법」 제24조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.

라. 또한,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,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